



[2020. 1. 7.] [30350 , 2020. 1. 7.,]

() 044 - 205 - 3356

1

1 () 「 」 45 · 46 「 」 30
. < 1986. 12. 31., 2001. 1. 29., 2005. 1. 7., 2015. 9. 25.>

2 () (" ") (" ")
. < 2001. 1. 29.>

3 () 「 」 4 가 ,
. < 1995. 4. 20., 2001. 1. 29., 2005. 1. 7., 2006. 1. 13., 2008. 12. 31.>

1 「 」 17 1 4
. < 2001. 1. 29., 2005. 1. 7., 2020. 1. 7.>
[2001. 1. 29.]

2

4 <1993. 12. 31.>

4 2 <1992. 1. 24.>

5 <2006. 1. 13.>

5 2() 「 」 31 「 」 43
4.1

. < 1992. 1. 24., 1995. 1. 28., 2005. 1. 7., 2006. 1. 13., 2008. 1. 11., 2008. 12. 31., 2011. 1. 10., 2012. 1. 6.>

1 10 가
. < 1993. 1. 15.>

4
[1990. 7. 11.]

5 3 <1993. 1. 15.>

6 () 1 7 2
. < 1986. 1. 25., 1999. 1. 21., 2003. 1. 20., 2008. 9. 10.>

1.1 7 1 12 31 1 1 (가)

2.7 1 1 6 30 1 1 (가)

1 1 (, 「 」 14 1 · 3 · 3 2 3 3)
15 1 15 .<

2012. 1. 6., 2017. 1. 6.>

$$\text{지급금액} = \text{제1항의 정근수당액} \times \frac{\text{실제 근무한 기간(월)}}{6(\text{월})}$$

1 가 . , (3 . 2 18 5 2) . 4

가 .< 2001. 1. 29., 2009. 3. 31.>

1 3 1 「 」 22 , 「 가 」 2 (「 」 13 1 1 · 2 「 」 14 「 」 15) . , 「 」 14 「 」

.< 1986. 1. 25., 1988. 12. 31., 1999. 1. 21., 2001. 1. 29., 2004. 1. 20., 2005. 1. 7., 2008. 1. 11., 2013. 12. 11., 2013. 12. 30.>

6 2() (.) 2 2 .< 2002. 1. 19.>

2 3 1 (" ") , 2 3 .< 2002. 1. 19., 2007. 1. 1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 2.
- 3.
- 4.
- 5.

2 1

3

[2002. 1. 19., 2006. 1. 13., 2007. 1. 12.>](#)

2 2 5

3 .< [2002. 1. 19.>](#)

2

()

7

가 2

.< [2002. 1. 19.>](#)

.<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 45 3

1

()

, 1

< [2015. 9. 25.>](#)

7

.< [2015. 9. 25., 2017. 7. 26.>](#)

[[1999. 1. 21.](#)]

7 <[2001. 1. 29.](#)>

7 2 <[1987. 12. 31.](#)>

8 <[2001. 1. 29.](#)>

9 () 「 」 78

가

가

1

.< [2005. 1. 7.>](#)

1

5

1

2

가

가

가

3 가

10 (가)

가

가

,

가

4

,

가

가 4

가

.< [2017. 1. 6.>](#)

1. : 4

2.

가. : 2

. : 6

. : 1 10

가 가
「 」 29 , . , 30
. < 2010.
1. 7., 2013. 1. 9.>

1
1 가 .<
2010. 1. 7., 2013. 1. 9.>

가 .< 1998. 6. 1., 2008.
2. 29., 2010. 1.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1 () 가 1
2 (3), 2 5 , 3 8 , 4 11 1 6
. , 가 가 가
. < 1999. 1. 21., 2008. 9. 10., 2013.
1. 9.>

1 " " 「 . 」 2
「 」 31 「 . 」 2
," " .< 1985. 9. 9.,
1993. 12. 31., 1996. 1. 19., 1997. 1. 24., 1998. 6. 1., 2005. 1. 7., 2006. 1. 13., 2008. 12. 31., 2011. 1.
10., 2013. 1. 9.>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
. < 1985. 9. 9., 1987. 12.
31., 1999. 1. 21., 2004. 3. 17., 2005. 1. 7., 2006. 6. 12., 2008. 1. 11., 2010. 1. 7.>

3 , 가
. , 15 1 , 15
가 .
. < 1985. 9. 9., 1995. 1. 28.>

. . . 4
, 4 . < 2009. 3. 31.>
10 4 , 5 , 9 11
"가 " " " . < 2010. 1. 7.>

11 2() 「 」 63 2 4 30
. < 2017. 9. 5., 2019. 1. 8.>

1. 3 : 80
150 150 , 70 70

2. 4 12 : 50
, 120 120 , 70
70 .

1

가

3

250

.< 2017. 9. 5., 2018. 7. 3., 2019. 1. 8.>

1. <2018. 7. 3.>

2. <2018. 7. 3.>

1

1

2

85

1

.<

2017. 9. 5.>

1

2

15

(3

1

2

1

)

6

6

「

」

61

2

(

)

.< 2017. 9. 5., 2020.

1. 7.>

가

「

」

38

15

2

(

"

"

)

.< 2017. 1. 6., 2018. 1. 18., 2020. 1. 7.>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 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 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50만원을 하한액 으로 한다)	x	$\frac{5}{\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 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x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text{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근무시간} - 5}{\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1

1

.< 2015. 1. 12.>

「

」

45

3

1

2

5

.< 2013. 1. 9., 2015. 1. 12., 2017. 9. 5.>

1

7

.< 2020. 1. 7.>

[2011. 1. 10.]

4

12 ()

6

5

4

3

, 「

5

」

2

1

5

20

.<

1985. 9. 9., 1993. 1. 15., 1995. 1. 28., 2000. 1. 28., 2001. 1. 29., 2004. 5. 4., 2005. 1. 7.,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 8.>

1 [10]

(" . ")

[10] (" .

")가 .< 1985. 9. 9., 1998. 6. 1., 2000. 1. 28., 2008. 2. 29., 2008. 9. 10.>

가 「

」 7 2

< 1985. 9. 9., 1991. 1. 28., 1991. 6. 27., 2001. 1. 29., 2005. 1. 7., 2008. 2. 29., 2008. 9. 10.>

.< 1999. 1. 21., 2001. 1. 29., 2008. 2. 29., 2008. 9. 10.>

5

13 () 7

8 . < 2016. 1. 12.>

14 ()

가

가 9

[2020. 1. 7.]

14 2() 「 」 38 16 2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0 가 가

) 20

.< 2016. 6. 28., 2017.

1. 6.>

$$\text{월 지급금액} = 20\text{만원} \times \frac{1}{\text{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 38 15 「 」 11

.< 2019. 1. 8.>

$$\text{월 지급금액} = 20\text{만원} \times \frac{\text{업무대행자의 실제 주당 근무시간}}{40\text{시간}} \times \frac{1}{\text{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2016. 1. 12.]

6

15 ()

.< 1990. 1. 15., 1999. 1. 21., 2008. 9. 10.>

55 (「

」 13 5

55 , " ") 209 1 150 .<

2017. 9. 5.>

2 11 .< 1986. 1. 25., 1993. 12. 31.>

1 4 , 1 57 .<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 」 5 가 가 (" ") (")

2. 「 」 3 1 「 」 2 1

3. 가 (" ") (月) (分) 1 .< 2012. 9. 28.>

1. 「 」 2 1 .

2. 1 : (日) 1 .

가. : .가 : 1 5 2 가 1 .<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2008. 1. 11., 2012. 9. 28.>

「 」 45 3 가 , 1 1 3 .< 2008. 12. 31., 2012. 1. 6., 2012. 9. 28., 2017. 1. 6.>

1 8 .<

2001. 1. 29., 2008. 1. 11., 2008. 2. 29., 2008. 12. 31.,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6 () .< 2013. 1. 9.>

1. .

2. .

1 8 , 15 2 209 1 50 .< 1993. 12. 31., 2005. 1. 7., 2006. 1. 13., 2012. 1. 6.>

15 8 .

.< 2008. 12. 31.,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3. 1. 9.]

17 () 9 18

.< 2012. 9. 28.>

1 15 2 26 1 150 .<

1993. 12. 31., 2005. 1. 7., 2006. 1. 13., 2012. 1. 6.>

.< 2005. 1. 7.,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5 8 .

.< 2008. 12. 31.,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2. 9. 28.]

17 2() 12 9 (

「 」 4 11 1 (

7.8) , . . (

.< 1993. 1. 15., 1999. 1. 21., 2005. 1. 7., 2006. 1. 13., 2009. 3. 31., 2011. 1. 10., 2011. 8. 29., 2013. 6. 11., 2017. 1. 6.>

1 .

[1992. 1. 24.]

17 3() 「 」 46 2 (" ")

(.) 1 .< 2005. 1.

7., 2011. 8. 29.>

1 .

6 . , .< 2002. 12. 31.>

6

4 30

, 10

「 」 3 3 .< 2002. 12. 31., 2005. 1. 7.>

(

) [2000. 12. 29.]

6 2

18 () 14 . , 3 . <
17 2 1 . <
2001. 11. 14., 2003. 1. 20., 2004. 1. 20., 2005. 1. 7., 2008. 9. 10., 2020. 1. 7.>
[2001. 1. 29.]

18 2 <2011. 1. 10.>

18 3(가) (" ")
가 . < 2008. 9. 10.>
가 60 15
 . , .< 2003. 1. 20., 2006. 1. 13.>
[2001. 1. 29.]

18 4 <2011. 1. 10.>

18 5(가) 1 가
가 . , .< 2001. 11. 14., 2003. 1. 20., 2015. 1. 12., 2016. 1. 12.>

1. ()
- 2.
3. 「 」 28 3 62 1 3 5
4. 「 」 8 4
5. 「 」 61 1
6. 「 」 12
7. 18
가 6 30 12 31 () , .<

2012. 1. 6., 2016. 1. 12.>
1 2 가 , 6 30 가 6
30 가 가 10 .< 2012. 1. 6., 2013. 1. 9.>

1. 6 30 가 : 6 30 86 × 1/30 × 5
2. 12 31 가 : [12 31 86 × 1/30 × 가] - 1
가

3 1 2 가
.< 2012. 1. 6., 2013. 1. 9.>
1. 6 30 : 86 × 1/30 × 가 (10
)

2. 7 1 12 31
가. 6 30 가 : 3 1
. 7 1 가 : [86 × 1/30 × 가
] - 2 가 가

1 4 가 가 .<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01. 1. 29.]

18 6() 14 .< 2008. 9. 10.> [2001. 1. 29.]

18 7() 「 」 18 , 20 1 • 2 , 21 24 • 가 • 가 가 • 가 • 가 " " " .< 2005. 1. 7., 2011. 1. 10.> [2003. 1. 20.]

18 8(가) 「 」 46 3 2 가 . 1 [2013. 6. 11.]

7 19 () .< 2001. 1. 29.> <1988. 12. 31.>

9 () .< 1985. 9. 9., 1988. 12. 31., 1989. 9. 1., 1990. 1. 15., 1991. 1. 28., 1992. 1. 24., 1993. 12. 31., 1995. 1. 28., 1997. 1. 24., 1999. 1. 21., 2000. 1. 28., 2001. 1. 29., 2001. 6. 18., 2002. 1. 19., 2002. 12. 18., 2004. 1. 20., 2004. 11. 3., 2005. 1. 7., 2010. 1. 7., 2013. 12. 11., 2014. 7. 16., 2017. 1. 6., 2020. 1. 7.>

1. 9 1 () 11
2. 9 2 11
3. 9 3 •
4. 9 8 1 ()
5. 9 (1 가 ,)
6. 9 1 11 (「 」 1 11 가)
7. 9 9 , 9 9 11
8. 9 11
9. 9 11 (「 」 25 3)

20 () 「 」 6 1
가 . < 2001. 1. 29., 2005. 1. 7.,
2008. 1. 11.>
[1986. 12. 31.]

21 () 「 」 46 2· 66 2
66 2 (1
) 「 」 21 1 ()
) 「 」 21 1 (1
)
< 2001. 1. 29., 2011. 8. 29.,
2012. 1. 6.>
< 2011. 8. 29.>
[1999. 1. 21.]
[2001. 1. 29.]

21 2() 「 」
3 2 2 , 「 」 3 5· 38 15 1 「
」 11 1 , 가
, <
2008. 9. 10., 2011. 1. 10., 2013. 12. 11., 2013. 12. 30., 2014. 1. 8., 2018. 3. 20., 2020. 1. 7.>
1 .<
2008. 2. 29.,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7. 7. 26.>
[2008. 1. 11.]
[2013. 12. 11., 2013. 12. 30.]

21 3() 「 」 3 2 3
2 6 6 2 10 가 , 11
, 15 , 18 18 6
,
1 209
1 150 , 1 100 150
1 2
< 2014. 11. 19., 2017. 7. 26.>
[2013. 12. 11.]

22 () 「 」 「
」
6 2, 12 14 , 15 17 17 2, 18

. < 2007. 1. 12., 2007. 12. 13., 2008. 2. 29., 2011. 1. 10., 2012.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06. 3. 23.]

23 () 10 11 가
가 「 19 1 4
가
[2016. 6. 28.]

< 30350 ,2020. 1. 7.>

1 ()

2 () 2020 1 1

3 () 2019 12 31

11 2 5

4 ()

10 2020 6 30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88.12.31>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11.8.29>

정근수당지급구분표(제6조제1항관련)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 지 급 액	비 고
	전 공무원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비 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개정 2017. 1. 6.>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1항 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제6조의2제2항 관련)

1.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3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2.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4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가군		나군		다군			
	26호봉		20호봉		13호봉			
3.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6항·제7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15호봉			16호봉				
4.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9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5.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10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직위가 없는 학관 및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3의 1급 20호봉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3의 2급 20호봉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3의 3급 20호봉	35호봉	30호봉	26호봉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 월봉급액을 말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19. 1. 8.>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

지급등급		지급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평가결과 상위 9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지급하지 않음

비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19. 1. 8.>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9조 관련)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 (연봉월액) 미지급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30퍼센트 (연봉월액의 2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100퍼센트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70퍼센트	수당 전액	

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제9조관련)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조세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미 : 500만원 미만

비고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제11조제1항 관련)

학 교	지 급 액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한정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사립의 학교에 한정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습비 전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위 표 지급액란 중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한다.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관련)

등급	월 지 급 액
갑 종	60,000원
을 종	50,000원
병 종	40,000원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등급 부문	갑 종	을 종	병 종
1. 해상 부문		가. 부정어업 단속 및 어로 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행정선·관광여객선·병원선 및 환자후송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 다. 해양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가. 항만 내의 부두관리·개항 단속·오물제거 및 항만역무를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 급수선·도선(導船) 및 자연보호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방역·보건 및 수의 부문		가. 방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 결핵·한센병·감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	가. 결핵·한센병·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여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3. 공업연구 부문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수산업 연구 부문		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 시약, 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병독을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나. 종축장(種畜場) 및 축산사업소에서 가축의 품종개량, 종축생산, 질병치료보조 및 축사관리 등 가축의 사양(飼養) 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p>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다.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 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검사에 종사하는 사람</p>	<p>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p>
6. 지하철 부문		<p>지하철도의 터널굴착 또는 교량의 건설 등 낙반(落磐)·갱붕괴(坑崩壞)·낙사상(落死傷)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p>	
7. 소방 부문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8.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부문		<p>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p>	<p>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9. 각 부문		<p>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p> <p>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다.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라.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정비, 작업차량 운전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p> <p>나.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p> <p>다. 구급차의 운전원</p> <p>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측정을 위하여 연돌(煙突)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p> <p>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p> <p>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p> <p>아.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비고: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1. 기술정보수당	<p>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p> <p>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p> <p>다. 소방기관에서 유선·무선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p> <p>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 공무원</p> <p>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p> <p>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p>	<p>1) 지급액</p> <p>가) 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이하</p> <p>나) 6급·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월 30,000원 이하</p> <p>다) 8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p> <p>라)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p> <p>마)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p> <p>2) 가산금</p> <p>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p> <p>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운전직렬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1) 6·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월 10,000원 이하</p> <p>(2) 8·9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p>

		<p>다)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사.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p>	<p>1) 지급액</p> <p>가)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p> <p>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p> <p>다)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p> <p>(비고)</p> <p>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p> <p>2) 지급방법</p> <p>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 또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p>
2. 의료업무등의수당	<p>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 제2항 및 「약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p>	<p>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p> <p>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p> <p>3) 간호직렬 공무원 및 보건진료소 외의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p>

		<p>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p> <p>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p>	<p>월 50,000원</p> <p>월 250,000원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교육 및 연구 분야	3. 연구 업무 수당	가. 연구직공무원	<p>1) 지급액 월 80,000원</p> <p>2)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p>(지급액)</p> <p>1) 5급·지방소방령 이상: 월 60,000원</p> <p>2) 6급·지방소방경 이하: 월 40,000원</p>

	(비고) 지급대상란의 나목 해당자가 다 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 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 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 수	(지급액) 1) 원장: 월 110,000원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 3) 부장: 월 100,000원 4) 장학관·교육연구원·장학 사·교육연구사: 월 80,000원 (비고)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 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지급액)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5년 이상</th> <th>5년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장학관·교 육연구원</td> <td>월 22,000 원</td> <td>월 37,000 원</td> </tr> <tr> <td>장학사·교 육연구사</td> <td>월 17,000 원</td> <td>월 32,000 원</td> </tr> </tbody> </table> (비고) 1. 장학관·교육연구원으로서 4 급 상당 이상의 직(職)에 보직 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 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2,000 원을 지급한다. 2. 교육전문직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 산한다.		5년 이상	5년 미만	장학관·교 육연구원	월 22,000 원	월 37,000 원	장학사·교 육연구사	월 17,000 원	월 32,000 원
	5년 이상	5년 미만								
장학관·교 육연구원	월 22,000 원	월 37,000 원								
장학사·교 육연구사	월 17,000 원	월 32,000 원								

			3. 지급대상란의 라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4.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직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지급액) 월 20,000원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월 60,000원			
	다.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교육연구원	1) 1·2·3급 상당 직위: 월 70,000원 2) 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5. 교직수당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월 250,000원			
특수장비취급분야	6. 항공수당 가.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전탐사(電探士)인 소방공무원(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을 위한 헬기에 한정한다) 나. 소방항공대 소속 공무원 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구 분	조종사	정비사·전탐사	
		지방소방령 이상	631,700원	313,400원	
		지방소방경	505,300원	279,100원	
		지방소방위	404,200원	217,800원	
		지방소방장	323,400원	196,000원	
		지방소방교	258,600원	184,200원	
		지방소방사	205,900원	174,200원	
		1)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2)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 월 40,000원 3) 지방소방교 이하: 월			

			30,000원														
	7. 합정 근무수 당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 박(병원선은 제외한다)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사람	1) 지급액 가) 5급 이상: 월 39,000원 이 하 나) 6급: 월 32,000원 다) 7급: 월 25,000원 이하 라)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1개월의 항해일수가 기준 일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 월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1 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나. 합정에 승선·근무하는 소방 공무원	(지급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계급</th> <th>월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지방소방령 이상</td> <td>65,000원</td> </tr> <tr> <td>지방소방경</td> <td>50,000원</td> </tr> <tr> <td>지방소방위</td> <td>37,000원</td> </tr> <tr> <td>지방소방장</td> <td>34,000원</td> </tr> <tr> <td>지방소방교</td> <td>30,000원</td> </tr> <tr> <td>지방소방사</td> <td>21,000원</td> </tr> </tbody> </table>	계급	월지급액	지방소방령 이상	65,000원	지방소방경	50,000원	지방소방위	37,000원	지방소방장	34,000원	지방소방교	30,000원	지방소방사	21,000원
계급	월지급액																
지방소방령 이상	65,000원																
지방소방경	50,000원																
지방소방위	37,000원																
지방소방장	34,000원																
지방소방교	30,000원																
지방소방사	21,000원																
			(가산금) 합정장에게는 해당 합정수당지 급액에 월 10,000원을 가산하 여 지급한다.														
특수 행정 분야	8. 장려 수당	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 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 보선·철도토목·철도건 축·전기통신·신호·보 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1) 일반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2) 일반직 7급: 월 38,000원 이하 3) 일반직 8급: 월 36,000원 이하 4) 일반직 9급: 월 34,000원														

<p>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이하</p>
<p>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1) 지급액 일반직 5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p> <p>2) 가산금 가)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2) 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3)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급: 월 40,000원 이하 (2) 2급: 월 30,000원 이하 (3) 3급: 월 20,000원 이하</p>

	<p>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p> <p>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p> <p>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p> <p>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p>															
<p>9.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p> <p>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p> <p>2) 「지방공무원법」 제30조</p>	<table border="1"> <tr> <td colspan="2" data-bbox="751 1368 1212 1429">(가) 지급액</td> </tr> <tr> <td data-bbox="751 1429 919 1489">지급대상</td> <td data-bbox="919 1429 1212 1489">월지급액</td> </tr> <tr> <td data-bbox="751 1489 919 1541">1급</td> <td data-bbox="919 1489 1212 1541">400,000원</td> </tr> <tr> <td data-bbox="751 1541 919 1592">2급</td> <td data-bbox="919 1541 1212 1592">300,000원</td> </tr> <tr> <td data-bbox="751 1592 919 1644">3급</td> <td data-bbox="919 1592 1212 1644">200,000원</td> </tr> <tr> <td data-bbox="751 1644 919 1695">4급</td> <td data-bbox="919 1644 1212 1695">100,000원</td> </tr> <tr> <td data-bbox="751 1695 919 1747">5급 이하</td> <td data-bbox="919 1695 1212 1747">50,000원</td> </tr> </table> <p>(나)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임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p>		(가) 지급액		지급대상	월지급액	1급	400,000원	2급	300,000원	3급	200,000원	4급	100,000원	5급 이하	50,000원
(가) 지급액																	
지급대상	월지급액																
1급	400,000원																
2급	300,000원																
3급	200,000원																
4급	100,000원																
5급 이하	50,000원																

	<p>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직위에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p> <p>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 직위에 교류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p>	<p>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및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p>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1) 지급상한액</p> <table border="1" data-bbox="751 974 1220 1556"> <thead> <tr> <th rowspan="2">근무기간</th> <th colspan="2">월 지급 상한액</th> </tr> <tr> <th>4급 이상</th> <th>5급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1년 미만</td> <td>100,000원</td> <td>70,000원</td> </tr> <tr> <td>1년 이상 2년 미만</td> <td>120,000원</td> <td>90,000원</td> </tr> <tr> <td>2년 이상 3년 미만</td> <td>180,000원</td> <td>150,000원</td> </tr>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 <td>300,000원</td> <td>250,000원</td> </tr> <tr> <td>4년 이상</td> <td>450,000원</td> <td>400,000원</td> </tr> </tbody> </table> <p>2) 지급방법: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p> <p>(비고)</p> <p>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p>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p>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 전문직위군의 해당 전문직위 외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 2.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같은 직급 및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에 한정한다)
10.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1. 특수직무수당	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대상 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 이상: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다.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라.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2) 가산금

<p>역대 및 구조·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화재조사 업무담당자 및 내근출동대 편성 근무자에 한정한다)</p>	<p>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한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나)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비고) 가)와 나)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마.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p>	<p>(지급액)</p> <p>1) 3급 이상: 월 120,000원 이하</p> <p>2) 4급: 월 100,000원 이하</p> <p>3) 5급: 월 80,000원 이하</p> <p>4) 6급: 월 60,000원 이하</p> <p>5) 7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p> <p>(비고) 상당 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p>
<p>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p>	<p>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p> <p>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p>

	<p>지급한다.</p> <p>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p>	<p>(지급액)</p> <p>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 월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p>
<p>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 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해양 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p>	<p>월 50,000원 이하</p>
<p>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 초·중·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p>	<p>월 30,000원 이하</p>
<p>차.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이 높은 6급 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정원의 10퍼센트 범</p>	<p>1) 지급액: 월 10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p>

	위 내)	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2.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 지급액: 월 200,000원 2)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3)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3. 비상근무 수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이 호에서 "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1일 8,000원[월 50,000원 이하(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65,000원 이하)] 2) 지급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 (제12조제2항관련)

1. 벽지지역

등급구분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가. 당해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나. 당해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다. 당해 기관과 나호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운행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하행 운행횟수의 합)	17회 이상 20회 이하	13회 이상 16회 이하	9회 이상 12회 이하	5회 이상 8회 이하	4회 이하
라. 당해 동 또는 리의 도로 면적 비율	1.5% 이상 2%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 미만	0.5% 미만	
마. 당해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 비율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바.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의원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사. 당해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접화·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수퍼마켓(소규모 가게·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1km 이상 2km 미만	2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아.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자.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차. 당해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미만	
카. 당해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타. 당해 기관의 직원수	5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상 4인 이하	2인	1인	
파. 당해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 고

1. 관광지역(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병지로 조정할 수 있는 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향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등급 구분 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	-----	-----	-----	-----	-----

가. 당해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 여객선 운항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특 ●갑 ●을 ●병
나. 당해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다. 당해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 여객선 운항횟수(입·출항 횟수의 합)	1일 8회 이상 15회 이하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1일 1회	1일 1회 미만	
라. 당해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보건소가 있는 경우	의원 또는 보건지소(진료소포함)가 있는 경우	약국만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마. 당해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육지로부터 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력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바. 당해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광역상수도 사용	간이상수도 사용	우물사용	상시급수지원		
사. 당해 도서 내에 슈퍼마켓, 이·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	5종류 중 4종류가 있는	5종류 중 3종류가 있는 경우	3종류가 있는	5종류 중 2종류가 있는	5종류 중 1종류가 있는	5종류가 없는

용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경우		경우	경우	
아. 당해 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미만	
자. 당해 도서의 차량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차. 당해 기관의 직원수	5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상 4인 이하	2인	1인	
카. 당해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연륙교(連陸橋) 및 연도교(連島橋) 등
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접적지역

특지	비무장지대
갹지	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
을지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
병지	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

비 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
아니하다.
2. 접적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
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지급대상	기준호봉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제9항을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해당 계급 또는 해당 계급 상당 10호봉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4항을 적용받는 지방전문경력관	가. 가군: 10호봉 나. 나군 및 다군: 11호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6항·제7항을 적용받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가. 연구관·지도관: 8호봉 나. 연구사: 10호봉 다. 21호봉 이상 지도사: 12호봉 라. 20호봉 이하 지도사: 10호봉
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0항을 적용받는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가. 장학관·교육연구관: 25호봉 나. 30호봉 이상: 23호봉 다.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21호봉 라. 19호봉 이하: 18호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 <개정 2016.1.12.>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 (제17조의2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 ·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도직공무원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 방 공 무 원	· 지방소방정 이상
교육공무원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 또는 병원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 삭제 <2011.1.10>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구 분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소방직·교육직 제외)	소 방 직	교육직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1,240,000원
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50,000원
		부총장	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1급(상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2급(상당), 연구관·지도관(2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2호)		장학관·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3호)	소방 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500,000원

4급 부단체장			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장학관·교육연구관	250,000원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소방경 소방위	장학사·교육연구사	165,000원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소방장		155,000원
8·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소방교 소방사		145,000원

비고

-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 4급·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소방준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200,000원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5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소방정·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8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소방경·소방위·소방장	장학사·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130,000원

5.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